

8월5일(수) 조건용 입니다



노동부 보도 자료

▶ 안전보건지도과 과 장 김양현
사무관 김용원
TEL : 02-6922-0943 / FAX : 02-6922-0972
E-mail : theorem@molab.go.kr

▶ '09.8.4. 배포
▶ 총 6 쪽

< 본 자료는 <http://www.molab.go.kr>(노동부 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5인미만 제조업체 10,000개소, 재해예방 집중지원 받는다”

- 노동부, 재해예방 기술지원 및 안전검사 사전컨설팅 나서기로 -

-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고위험 업종의 5인 미만 제조업체 중 위험 기계·기구 보유업체를 중심으로 한 10,000개소가 재해예방을 위한 노동부의 집중 기술지원을 받게 된다.
- 노동부는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산업재해를 사업장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재해자수가 유일하게 증가함에 따라,
 - 올 8월부터 집중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통하여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위험요인을 개선,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근로자들을 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다.
- 이번 “5인미만 제조업체 재해예방 기술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 기술지원 대행요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 ▲ 사업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감김·끼임, 떨어짐, 넘어짐 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지도하고 ▲ 산업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주는 한편,

○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 기계·기구에 대하여 예비검사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 사업주의 검사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열악한 작업환경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여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 잦은 휴·폐업 등으로 소재 파악 및 관리가 어려워, 그간 재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미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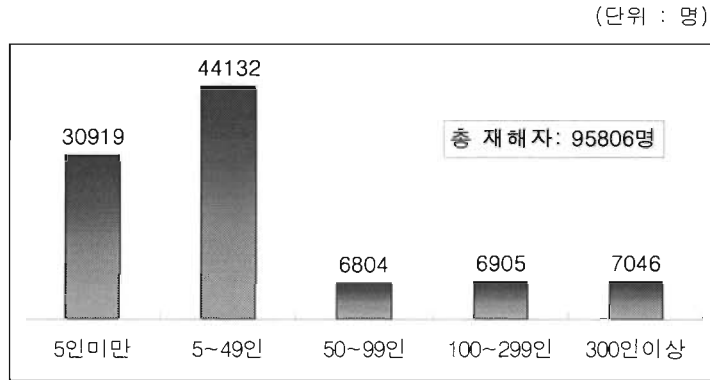
□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그 동안 정부의 재해예방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본격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하게 되었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좀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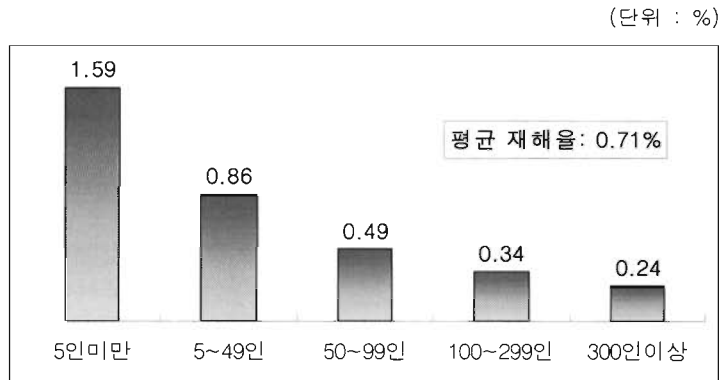
- 붙임 1 : 산업재해 현황
- 붙임 2 : '5인미만 제조업체 재해예방 기술지원'사업 개요
- 붙임 3 : 안전검사제도 개요

[붙임 1] 산업재해 현황

○ 사업장 규모별 재해자수('08년도)



○ 사업장 규모별 재해율('08년도)



○ 사업장 규모별 재해자수 증감('09.6월말/전년동기 대비)

구분	전체	5인 미만	5인~49인	50인~99인	100인~299인	300인 이상
증감(명)	△1,145	1,433	△897	△425	△417	△839
증감율(%)	△2.47	10.4	△4.1	△12.1	△11.7	△22.6

[붙임 2] '5인미만 제조업체 재해예방 기술지원'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5인 미만 산재다발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기계·기구 및 산업용 기계설비 중심의 재해예방 기술지원을 통해 재해감소 및 안전검사 제도 조기정착의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

2. 사업 대상 및 수행기관

- 사업대상 : 5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재해율 상위 17개 업종에 속한 사업장 10,000개소로서
 - 안전검사 대상품 보유 사업장 5,000개소 및
 - 안전검사 대상품 또는 기타 기계·기구를 보유한 사업장 5,000개소

《 참고 : 5인 미만 재해율 상위 17개 업종 재해발생 현황 》

순위	업종명	재해율	사업장수	순위	업종명	재해율	사업장수
계			88,903	9	식품제조업	3.73	7,062
1	선박건조및수리업	10.08	1,684	10	펄프및지류제조업	3.41	2,404
2	제재업및배너어판제조업	8.14	487	11	기계기구제조업	3.41	27,580
3	유리제조업	6.79	849	12	화학제품제조업	3.14	12,344
4	금속재료제품제조업	6.76	1,335	13	고무제품제조업	3.13	1,516
5	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	6.00	18,813	14	도금업	3.04	1,722
6	목제품제조업	5.68	5,040	15	금속제련업	2.77	58
7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5.28	3,325	16	섬유또는섬유제품제조업(을)	2.59	3,781
8	요업또는토석제품제조업	4.64	900	17	코크스및석탄가스제조업	0.00	3

※ 재해율은 최근 3년간 평균 재해율이며, 사업장수는 '09년 4월 기준임

- 수행기관 : 종전('08년도까지) '자체검사'를 대행하였던 지정검사기관

3. 기술지원 방법 및 내용

- 기술지원 방법 : 지정검사기관의 기술지원 대행요원이 대상 사업장을 2회 방문하여 기술지도
- 기술지원 내용
 - ▶ 1회차 방문
 - 위험기계기구 및 일반산업용 기계설비 안전점검
 - 협착, 추락, 전도 등 3대 다발재해 및 감전 등 재래형 재해예방 기술지원
 - 안전검사 대상품 파악 및 안전검사 조기신청 유도
 - 안전표지 부착 및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각종 기술자료 보급 등
 - ▶ 2회차 방문
 - 1회차 기술지원내용에 대한 개선여부 확인
 - 추가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유도
 -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기술상담 및 교육 실시
 - 안전검사 대상품 검사신청 독려 등

[붙임 3] 안전검사제도 개요

□ 안전검사 제도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

□ 안전검사 대상품

- 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12종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로울러기, 사출성형기

□ 안전검사를 받으려면

- 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음

안전검사기관	검사품목	비 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or.kr	전체(12종)	2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검사만 수행
대한산업안전협회 http://www.safety.or.kr	전체(12종)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http://www.kest.or.kr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압력용기, 화학설비, 건조설비	
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 http://www.kodimia.org	전체(12종)	

□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사업

- 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20만원까지 안전검사 수수료를 지원
 - 지원조건 : ①최초 1회 신청시에 한하여 지원 ② 사업장이 보유한 안전검사 대상품 전체에 대한 조사표 작성 후 지원